

	산학협력추진위원회 운영 규정	규정 번호	4-1-20
		제정 일자	2011. 6. 1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대외협력처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추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대외협력장 (이하 “처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 <개정 2022.3.10.,2023.3.30.,2024.3.20.>

② 위원은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처장의 추천으로 신안산대학교 총장(이하“총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 <2022.3.10. 개정>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.

1. 산학협력 우수대학의 사례 분석
2.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개발
3. 산학협력 업체의 발굴 및 관리
4. 각종 산학협력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 수주
5.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 및 환류계획 수립 <2017.9.27. 개정>
6.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활동 <2017.9.27. 개정>

제4조(운영)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<2022.3.10. 개정>

②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회의 참석 및 산학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)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